

「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직권 처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」 공시송달 공고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,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「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직권 처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」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고 사업장 및 사업주와 전화 통화도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1. 2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장



1. 건 명 :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 직권 처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
2. 근 거 :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,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1-30호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붙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4. 1. 3. ~ 2024. 1. 17.(15일간)
5. 문의사항 :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지역협력과 김태정(☎ 031-828-0829)

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49 신동아파라디움 1층